

1 제공 대상

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2)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3)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환자 등

2 신청 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확인



인터넷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신청결과 확인

①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②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③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21. 12. 15.(수)~12. 17.(금)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우편번호 06756>

④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22. 1. 19.(수)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검토결과 게시

⑤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4번 항목)'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유의사항>

- 상이등급자(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 후 편의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의사진단(소견)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별도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 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다.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받지는 않으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음

1) 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진단서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1)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편의지원 제공이 가능함

<서류제출 면제 세부조건>

-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 진단서 발급일자: 2019. 12. 18. 이후(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문제지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의사진단서 1부 ·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의사진단서 1부 · 제출서류 없음
지체	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전체 (구 1~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청각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낮낮이 조절 책상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진단서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시간 연장은 불허) 	· 의사진단서 1부

※ 시간연장, 대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확대문제지(A3규격):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선택

※ 축소문제지(A4규격): 82%로 축소 / · 확대답안지(A4규격): 표기형, 기입형

※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음

5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1)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하여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 2)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유의사항>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나. 발급일자: 2019. 12. 18. 이후(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다. 의사진단(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 중의 초록색 표시 내용)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중의 보라색 표시 내용)
- 3)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중의 갈색 표시 내용)

<유의사항>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의사진단(소견)서 예시
시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시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시험지 문제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지원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1.7배)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2022. 2. 26.)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장애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마.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바.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편의지원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9)으로 문의